

국토교통R&D 올바른 연구비 사용을 위한 길잡이

국가 R&D 연구비 부정정집행 사례집

2025. 05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시는 연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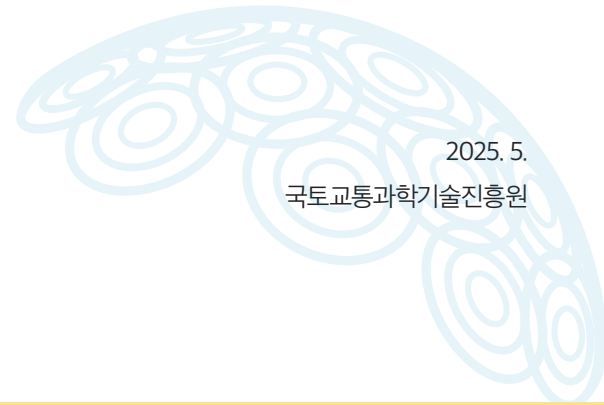
KAIA는 연구개발(R&D)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연구에 몰입해야 하는 동시에,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수고를 잘 알기에 지원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R&D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나, 연구비 집행 규정을 미숙지하여 사용실적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는 연구비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본 사례집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가 연구비를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례집은 국가 R&D 전반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폭넓게 그리고 현실감있게 포함하고자 하였고, 집행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의 소개를 통해 연구자 여러분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미연에 경감함으로써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구비 집행 규정과 본 사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일선의 연구자에게도 적극적인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집이 연구비 집행의 올바른 방향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소중한 연구가 성과를 거두어 국토교통R&D가 여러분들과 함께 혁신적인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R&D 올바른
연구비 사용을 위한 길잡이

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

CONTENTS

04	I. 들어가기전에
06	연구비 사용전 꼭! 기억해야하는 사항

10	II. 부적정집행 사례
-----------	---------------------

12	인건비
24	학생인건비
29	연구시설·장비비
38	연구재료비
42	연구활동비
58	연구수당
64	위탁연구개발비
6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71	간접비
79	기타 사례

84	III. 자주 묻는 질문
-----------	----------------------

92	IV. 상시·연차점검 / 정산 절차
-----------	----------------------------



국가 R&D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집



I.
들어가기전에

연구비 사용전 꼭! 기억해야하는 사항 06

연구비 사용전 꼭! 기억해야하는 사항

01.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

(예외)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사용한 후 연구비가 입금된 후 연구개발기관으로 계좌이체 가능

- * 연구비 카드 발급 전이라면 법인카드 선 사용가능
- **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되어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자원(법인카드, 계좌이체)으로 선 사용한 금액 등은 연구개발비 수령 후 연구개발기관으로 계좌이체

02.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지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마련이 필요)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음

03. 건별 지급기관의 계좌이체는 통합이지바로에서 거래처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

- (예외) * 인건비 및 해외송금은 제외
- ** 일괄지급기관의 경우, 계좌이체건에 대해서 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첨부

04. 통합이지바로에 등록된 정보 확인

총사업기간 및 단계 기간 정보, 통합이지바로에 등록된 참여연구원 현황(참여기간, 계상률 등), 현물 및 현금 예산 정보 등이 협약된 사업계획서대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 필요



05.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로 구분된 과제는 단계종료일) 이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

(예외) 보고서 발간 비용, 평가관련비용,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사용실적 보고일까지 목적사항 이행 완료시) 등은 사용실적 보고일(단계 또는 최종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함

(주의) 다만, 연구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더라도 세목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는 세목(연구시설·장비비나 연구재료비 등)은 사용이 불가능함

- 연구시설·장비 :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임차·검수 완료
- 연구재료비 : 연구종료일까지 구매·검수 완료
- 연구용 SW :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 체결
- * 연구용 SW의 경우 연구종료일 2개월 전에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종료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해야 인정 가능

06. 아래의 비용은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 불가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 동일건 중복계상 및 중복 집행
- 내부자 거래(예외, 내부기관내 별도 사업자, 시험·검사·분석 비용,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능) / 미인정된 내부공간 및 외부공간 임차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참고

07. 세목별로 정해진 기한 내 검수 및 연구비 집행이 완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단계종료 2개월 전에는 전문기관에 이월 승인 신청

* 현물 및 연구수당은 다음 단계로 이월 불가

08. 연구비 계획 변경 전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인지 확인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제74조(사전 승인 절차) 참고

09. 회의비 중 식비 계상 불가.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 가능

10. 성과물 홍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은 간접비로만 집행가능

11. 직접비 사용비율이 저조할 경우 연구수당, 간접비 불인정

연구수당 불인정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20%p 초과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7항)
간접비 불인정	직접비 집행비율이 50%이하 시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12. 연구실 환경유지비

- (영리기관)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SW비용, 냉난방 및 환경 유지비용의 경우, 협약시 활용관리계획을 첨부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다만 국가연구비 사용기준 직접비 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대상
- ex)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한 환경조건(온도,습도,조도,멸균 등)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및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연구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인정)
- (불인정)
- 단순히 참여연구자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비용은 연구실운영비가 아님
 - 해당 연구자가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는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수 없음
 - 해당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항만으로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수 없음

1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해당연차 종료 3개월전까지 입금

- * 해당연차 종료 3개월전까지 민간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구비 집행이 시스템(Ez-baro)에서 자동중단됨
- ** 건별지급기관은 시스템(Ez-baro)에서 발급되는 민간부담금 가상계좌에 입금, 일괄지급기관은 연구비 통장으로 입금

14. 세부 항목 계상 비율

(연구수당) 최종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 최종 수정인건비 : 참여연구원 등록 인건비, 현물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를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건비는 제외

(보안수당) 참여연구원의 각 개별 인건비 총액(미지급 인건비 포함) x 3%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x 40%

(간접비)

기준	비율	기관형태
직접비 (미지급,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10%	영리기관
	17%	비영리기관
	5%	간접비 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과기분야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타 비영리

* 정부출연기관 간접비 별도 흡수 가능 / 비영리기관이 간접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으로 이체·계정 대체하는 경우 사용으로 인정

** (간접비 적용시점) 단계시작 시점 간접비 적용 원칙

(간접비-인력지원비-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차 간접비의 10% 이하

(연구시설·장비비)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시설 · 장비 구입 · 설치비를 구입 · 임차 · 사용대차가의 20%내 현물 계상

* 구입 완료일은 연구 시작일 5년 이내이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과제 최종 연차까지 인정

** 여러 개 연구과제에 현물로 계상한 경우 구입가 초과 불가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 시작전 2년 이내 기술도입비(50%까지 현물 계상 가능)
-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현물 포함)의 40% 초과 불가





Ⅱ.

부적정집행 사례

01. 인건비	12
02. 학생인건비	24
03. 연구시설·장비비	29
04. 연구재료비	38
05. 연구활동비	42
06. 연구수당	58
07. 위탁연구개발비	64
0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68
09. 간접비	71
10. 기타 사례	79

01

인건비



사례 1.

영리기관인데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해 현금인건비 총액을 감액 집행하였는데, 마침 시험분석비용이 부족하여 남은 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어요.

정산결과

영리기관인 경우, 현금인건비를 전문기관 사전승인없이 감액하고, 다른용도로 집행한 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1항 4호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증액 또는 감액)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

사례 2.

영리기업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는 현금지급 인건비 단가기준을 작년 연봉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실제 집행시에는 임금인상율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보다 높은 연봉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총 현금인건비가 연구개발 계획서 보다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영리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의 총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1항 4호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증액 또는 감액)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영리기관의 신규인력으로 계상되어 있는 현금 인건비를 기존 인력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어요.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를 사전 승인 없이 감액하여 기존인력 인건비 용도로 집행한 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제1항 제4호 나목

영리기관이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4.

영리기업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대략적인 인건비 단가기준을 잡다가 보니 실제 해당 인력의 인건비 단가기준 보다 과다하게 연구개발계획서에 산정되었고, 연구개발비 중 현금 인건비의 사용도 실제 해당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비해 초과하여 집행되었습니다.

정산결과

기관 규정에서 정하여 지급한 급여 대비 초과집행된 인건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48조, 제57조, 제65조

연(월)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사례 5.

실지급 급여가 아닌 엔지니어링 단가를 적용하여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참여연구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에 계상물을 곱한 금액과 사업비에서 집행한 인건비를 비교하여 과다 집행된 인건비를 불인정

적용근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례 6.

A 대학에서 000 참여연구자 인건비 기준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인건비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정산결과

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되어 집행한 인건비 초과집행금액 또는 기준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산출되어 집행된 인건비 초과집행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48조, 제57조, 제65조

연(월)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사례 7.

우리 기관 규정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 식대,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 기준 산정시 모두 포함해서 계상하고,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어요.

정산결과

수당 및 복지포인트가 급여대장상 기재되어 있고, 통상적인 월급여로 포함되는 경우 인정, 급여대장에 기재되지 않고 별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등은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48조, 제57조, 제65조

연(월)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기준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지급하는 수당, 복지포인트 등은 통상적인 월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8.

참여연구원인 김ㅇㅇ 연구원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했는데,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을 기관계정으로 흡수했어요.

정산결과

참여연구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80조 1항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없어지게 된 경우 연구개발비로 복원하여 사용하시거나 연구가 종료된 이후라면 해당 금액은 불인정되어 회수하게 됩니다.

사례 9.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음에도 급여 총액을 인건비로 사용했어요.

정산결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한 인건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3항, 제48조 3항, 제65조 3항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1개월간의 급여 총액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급여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 10.

참여연구자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 인건비로 사용 했어요.

정산결과

현금 인건비로 사용한 참여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불인정 대상임.
다만, 간접비에서는 지급 가능함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2.간접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례 11.

A 비영리기관에서 모든 참여연구자의 급여의 기관부담금에 사업소세
(주민세 종업원분)* 혹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포함시켜 연구비에서 집행하였다.

정산결과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4대보험에 해당되지 않은 바, 인건비로 집행할 경우 불인정

* 주민세 종업원분은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소 종업원 급여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성격의 세금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6조제1호의 간접비-연구지원비의 기관 공통 비용으로 계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함.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출연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사례 12.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인건비 항목으로 사용 했어요.

정산결과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에 소속된 지원인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나,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지원인력은 인건비 사용이 불가함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 제2호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1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을 참여연구자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사용하였어요.

정산결과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불인정됨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5.04.)」p.194

원 소속기관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사례 14.

비영리법인이 외부인건비로 대학의 교수님과 중소기업의 대표에게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예외)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한 경우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사례 15.

참여연구원이 퇴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해당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통합이지바로에 변경된 참여연구원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정산결과

참여연구원 변경 사항을 통합이지바로에 반영하지 않아, 참여연구원으로 확인 되지 않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비참여 연구원에게 집행한 인건비 이므로 해당 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례 16.

A 영리기관에서 B 기관 소속의 000를 A 영리기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외부연구참여자로 인건비를 집행했으나, 000의 원 소속기관인 B 기관의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하지 못하였다.

정산결과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하지 못한 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제9호

영리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례 17.

원 소속기관이 있는 외부참여자가 원 소속기관에서 100%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인건비를 집행하였다.

정산결과

원 소속기관에서 100%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인력에게는 현물 인건비 집행이 원칙이므로, 집행한 현금인건비 불인정

적용근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사례 18.

중소기업 신규채용인건비 예산을 신규인력 채용이 여의치 않아 현금인건비 총 예산 한도 내에서 기존인력 A, B 연구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 이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정산결과

사전 승인 대상인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임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않고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신규채용 인건비 계상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제4호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

사례 19.

참여연구원 변경을 IRIS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채 당초 계획에 없는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어요.

정산결과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의 인건비 지급은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1항 및 별표2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계상되는 것으로, 참여연구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불인정 됩니다. 현금인건비 총액이 변하지 않더라도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변경내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추가 부정정집행 사례

- ① 영리기관의 인건비를 전문기관 사전승인없이 변경사용한 금액
- ② 현물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③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예 : 참여연구원의 계좌가 아닌 참여연구원 부인의 계좌로 이체한 인건비)
- ④ 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서비스 목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현금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 ⑤ 원 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인건비를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외부인건비를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⑥ 인건비계상률 0%인 참여연구원에 대한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액
- ⑦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참여연구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액
- ⑧ 연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액
- ⑨ 통합이지바로에 등록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 ⑩ 연구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아닌 부인 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 지급한 인건비 금액
- ⑪ 현금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의 자계좌로 일괄 선인출한 경우(인건비의 경우 통합이지바로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참여연구자에게 지급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집행 후 연구개발기관의 자계좌로 이체하여야 함)
- ⑫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로 계상한 경우
- ⑬ 영리기관에서 참여연구원이 아닌 행정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의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로 사용한 금액
- ⑭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한 경우



한걸음 더!

- ① 영리기관이 참여연구자에게 먼저 인건비를 지급한 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해요.
*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에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자계좌이체 가능
- ②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에 대해 지급가능해요.
- ③ 연구개발기관은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단위 10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해요.
* 단, 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참여연구자의 경우 총인건비계상률 연단위 130% 초과지급 불가
- ④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이 불가하며, 신규 채용 참여자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해요.
- ⑤ 영리기관은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해요.
- ⑥ 영리기관의 경우 신규 현금 인건비 총액이 감액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해요.
- ⑦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직접비내의 연구근접지원인력】비영리기관만 계상가능, 영리기관은 계상불가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간접비내의 연구지원인력】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 모두 계상가능

- 연구수행에 수반되는 행정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02

학생인건비



사례 1.

기타 비영리기관인데, 대학 등에 재학중인 학생연구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학생인건비를 지급했어요.

정산결과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는 기타 비영리기관이 학생연구자가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학생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므로, 학생인건비 예산을 인건비 등으로 변경 필요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

학생인건비는 대학,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에 한해 계상 및 사용 가능합니다.

사례 2.

OO대학의 연구책임자는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학생인건비를 집행했어요.

정산결과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에 지급된 학생인건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1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이 아니므로 직접비로 계상 및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례 3.

OO대학교는 학사과정 학생연구원에게 학생인건비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중 보조원(229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지급했어요.

정산결과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계상되어 지급된 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9조 및 제40조 4항

연구개발기관(대학)의 장은 학사과정 월 130만 원, 석사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월 300만 원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학술연구용역 단가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4.

OO대학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일부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계상을 10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했어요.

정산결과

학생연구자의 월별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9조 및 제40조 5항

연구개발기관(대학)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 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례 5.

OO대학교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 참여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후 이를 다시 연구실 공동관리 통장으로 회수하여, 연구실 공동물품 구입 및 연구책임자의 개인용으로 사용했어요

정산결과

인건비 부당회수 등에 해당하는 학생인건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 2항

연구개발기관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 인건비 부당회수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위반 행위입니다.

사례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련 필수 증명자료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등 과제 참여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하지 못했어요.

정산결과

해당 과제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5.04.)」 p.196 <표 3-13>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분	증명자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비대상 과제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공통)

-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 필요

-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시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추가 부적정집행 사례

-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금액
- ② 월별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사용 금액(전부처 R&D통합)
- ③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사용 금액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월 130만 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300만 원
- ④ 학생연구자를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한걸음 더!

-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증빙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수입액 계좌이체 증명자료를 구비하시면 되요.
- ②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03

연구시설·장비비



사례 1.

연구장비 구매 품의를 연구수행중에 진행하였는데
단계 종료 일주일 전에 입고 되었어요.

정산결과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검수완료)가 되지 않은 연구장비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 5항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아래의 경우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종료일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사례 2.

영리기관으로 2021.4.1. 연구개발과제를 시작했고,
연구시작전부터 임차해온 연구시설 임차료를 연구비로 집행했어요.

정산결과

연구시작 전부터 임차해온 연구시설 임차료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6조 1항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사례 3.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필요한
A연구장비(30백만 원, 부가세 포함)를 구매했어요.

정산결과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사전 승인없이 구매하여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1항 5호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4.

원래 30백만 원에 구매하기로 했던 B연구장비를 최근 환율이 급등하여
40백만 원에 구매했어요.

정산결과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사전 승인없이 20%이상 증액 변경하여 구입하여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1항 5호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5.

원래 95백만 원에 구매하기로 했던 C연구장비를 가격인상으로 인해
105백만 원에 구매했어요.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연구시설·장비 심의)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지 않았어요.

정산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구매하여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 3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9조 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도입시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 6.

거래처와 다음과 같이 D연구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액) 25,000,000원

(납품기한) 2024년 9월 30일

(지체상금)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기간 내에 납품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당 0.3%, 최대 계약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거래처는 실제 2024년 10월 10일에 D연구장비를 납품하였고,
담당자는 계약서상 지체상금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거래처에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집행하였어요.

정산결과

구입처의 납품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4항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은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5.04.)」p.178 <표 3-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구분	계상불가
일반	-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 -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환차익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례 7.

우리회사는 내용연수 10년인 E연구장비를 7년전에 100백만 원에 구입했어요.
연구과제를 시작하면서 아직 내용연수가 3년이나 남아있는 E연구장비를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구입가의 10%인 10백만 원을 현물로 계상했어요.

정산결과

현물로 계상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므로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6조 1항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사례 8.

장비를 해외에서 구매하였는데, 사업 종료일 현재 통관이 완료되지 않아
인천 항만의 통관 창고에 있습니다.

정산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검수완료)가 되지 않은 연구장비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 5항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사례 9.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였어요.

정산결과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시설·장비 집행금액은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제3항제1호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사례 10.

연구개발기관은 웹보수비용으로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기간까지 유지보수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시설·장비비로 전체기간에 대한 금액을 집행하였어요.

정산결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사용되는 연구시설·장비비 금액은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4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외) 아래의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 가능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사례 11.

연구개발기관은 거래처로부터 각종 연구장비를 구입하였으나,
자체규정에 따른 검수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연구시설·장비비를 집행등록하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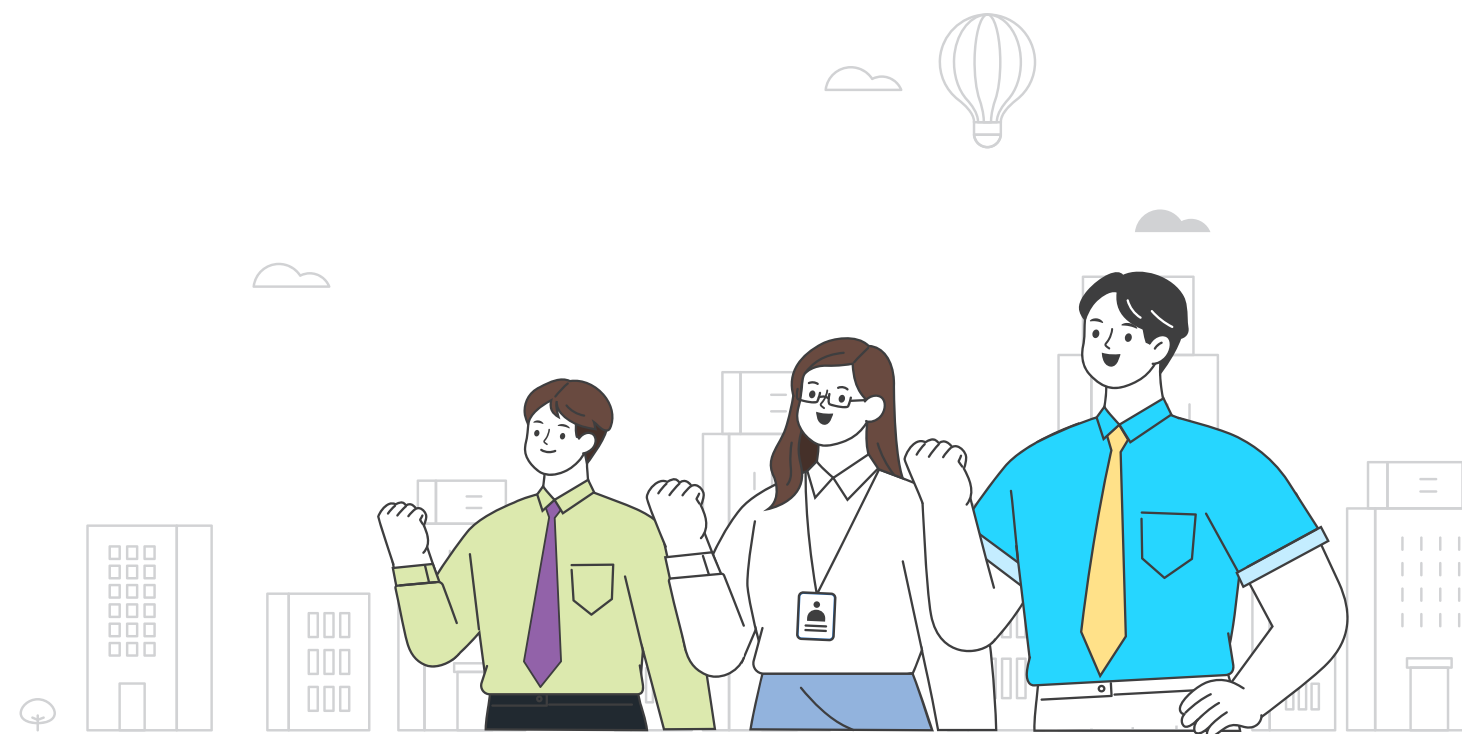
정산결과

연구시설·장비 구입시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에 따라 검수하지 않은 집행금액은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 22조 3항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연구종료일(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합니다.



추가 부적정집행 사례

- ① 연구개발계획서상 명시하지 않은 기관 소유 장비 수리비
- ②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연구비카드 취소 금액, 환차익 등을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지않은 금액
- ③ 수입신고필증 누락된 외자구매금액 (수입신고 제외되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 ④ 연구개발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 ※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인정
- ⑤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거나,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 또는 구매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
- ⑥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연구시설·장비로서 연구개발과제평가단(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1억 원 이상) 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
- ⑦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 전에 납품(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금액. 단, 아래 각목의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도입기간을 예외로 함
 -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1개월 전
- ⑧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 해당연도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한 금액(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된 경우는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계정 대체한 경우는 예외로 함)
- ⑨ 심의 받은 장비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사용 하는 경우
-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지 않은 연구공간 임차료를 집행한 경우
- ⑪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장비 구축비용이 3천만 원 이상임에도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한걸음 더!

- ① 구매의뢰서 등의 내부결재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해야 해요.
- ② 기관공통으로 사용하는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할 수 없어요. 단, 대학인 경우에 한해 간접비로 사용가능해요.
- ③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를 제출하면 사용가능해요.
- ④ 연구시설·장비비는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고 사용해야해요.
- ⑤ 장비 심의 대상이되는 구입가격은 부가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영리법인의 경우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고려해야해요.
- ⑥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구입·임차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려면(증액, 감액, 신규, 취소)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해요.
- ⑦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제계획서에 구매계획이 포함되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협약변경(중앙행정기관의 장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 ⑧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협약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 ⑨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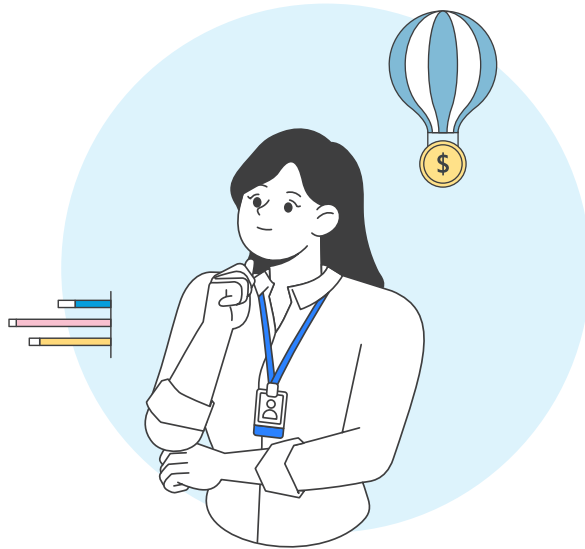
연구시설·장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승인 사항]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04

연구재료비



사례 1.

시험설비제작을 외부에 맡겼는데 연구비 집행은 연구종료일 전에 했고,
연구종료 후 시험설비가 입고되었어요.

정산결과

구매(검수완료)기한 지연으로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2조 3항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종료일(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 구매(검수완료)해야 합니다.

사례 2.

연구과제 수행에 급하게 필요한 A재료를 B거래처로부터 10백만 원 구매했어요.
B거래처의 사장님은 우리회사의 주주(40%)예요.

정산결과

영리기관으로서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4항 6호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례 3.

연구과제 종료 1주일 전에 연구비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확인하고, E재료를
19백만 원 어치 구매하기로 했어요. 재료는 과제종료 전일에 입고(검수완료)되었고,
지금은 과제가 끝나서 연구에 사용하지 않고 전량 재고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정산결과

과제 종료 직전에 과도하게 구매하고 연구과제에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로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3항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사용하지 않은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례 4.

재료를 해외에서 구매하였는데,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인지 모르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수입신고필증이 없습니다.

정산결과

적격증빙인 수입신고필증 미비로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5.04.)」p.215 <표 3-15>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구분	증명 자료
연구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사례 5.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C재료를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D회사로부터 7백만 원에 구매했어요.

정산결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한 비용으로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1조 4항 5호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서는 안됩니다.

(예외)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추가 부적정집행 사례

- ①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재료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 ②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된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③ 재료비로 집행한 간접비성 경비(안전관리비)
- ④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된 경우
- ⑤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 시작품을 현물로 사용한 금액
- ⑥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에 과제 사용 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재료비를 대량 구매한 경우
- ⑦ 해외 송금을 위해 통합이지바로에 등록된 집행금액이 실제로 외화 송금액 보다 큰 경우 차액 불인정
- ⑧ 협약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집행된 경우
- ⑨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에 과제 사용 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재료비를 대량 구매한 경우

한걸음 더!

- ①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 구입비에 대하여 현물로만 계상 가능해요.
- ②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어요.
- ③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에는 수입신고 서류를 구비해야 해요. 이 때,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를 구비하면 돼요.
- ④ 구매의뢰서 등의 내부결재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해야 해요.

05

연구활동비



사례 1.

영리기관인데요. 원래계획에 없었지만 연구수행중 필요하여 연구실운영비로 PC 및 사무실 책상을 구매했어요.

정산결과

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작성하지 않은 PC 및 사무실 책상 구매비용은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 제4항 및 제73조 제1항 제6호

영리기관의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협약 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신설 또는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사례 2.

과제목표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게 되어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창출활동비로 출원 관련 수수료를 집행했어요.

정산결과

직접비인 지식재산창출활동비 항목에서 집행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경비는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7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직접비의 지식재산창출활동비로 집행 가능하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지식재산창출활동비로 집행이 불가하며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례 3.

특허 출원을 위해 특허법인과 사전조사 및 출원 등의 업무를 일괄 계약 체결하여, 출원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특허 출원 비용은 직접비로 집행 불가하므로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7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5.04.)」 p.216~229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직접비의 지식재산창출활동비로 집행 가능하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지식재산창출활동비로 집행이 불가하며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례 4.

학회를 참가하기 위해 식대를 포함한 여비를 지급받았고,
그날 저녁 학회장소 근처에서 연구 관련 회의를 하게 되어 회의비를 지출했습니다.

정산결과

식대를 포함한 여비를 지급 받았을 경우 회의비 중 식대는 불인정(이중지급 불가)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3호 가목 및 제25조 제7항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사용은 불가하며,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 5.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기관인데요. 영리기관인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분 중에
우리 과제 자문위원으로 적합한 분이 계셔서 자문을 부탁하고, 수당을 지급했어요.

정산결과

영리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원과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활용비 불인정

사례 6.

영리기관인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 수행중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여, 공동연구개발
기관인 00대학의 타 과 교수님께 자문을 받고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지급된 전문가활용비 불인정

사례 5,6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5호, 제41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5.04.)」 p.220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집행이 불가하므로,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지급된 전문가활용비는 불인정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영리기관 상호간 또는 비영리기관 내 전문가활용시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에 소속된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집행 가능합니다.

<기관유형별 전문가활용비 지급 가능 여부>

기관유형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에 소속된 전문가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에 소속된 전문가
비영리기관	불가	가능
영리기관	불가	불가

* 동일부서(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사례 7.

외부기관과 예정되지 않은 회의를 실시하게 되어, 사전결재를 받지 못하고 회의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사전에 내부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회의비 식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5조 제4항 및 부칙

2024년 12월 1일부터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시 사전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식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내부결재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결재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회의록에 변경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거나 내부결재 문서의 사후 수정 결재를 득하여야 합니다.

* 사전결재 시점: 사전 내부결재는 “회의 시작 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 중 늦은 시간까지 완료

사례 8.

영리기관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지 않는 부가가치세도 회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사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1조 제4항 제1호

실제 환급 여부를 불문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연구개발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례 9.

학회연회비를 집행하려고 보니 연회비와 종신회비가 얼마 차이나지않아 연구비로 집행하고, 종신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정산결과

학회 가입비는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만 인정되므로 종신회원 가입비는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5조 제14항 제2호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는 개인성 경비로 연구비로 계상 불가한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0.

25년 1월에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24년 11월에 사전등록 및 학회 참가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4년 12월말 기준 해당 연구원이 참여연구자에서 제외되었으나, 25년 1월 학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정산결과

비참여연구자를 대상으로 집행한 학회 참가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5조 제14항 제1호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는 계상이 불가하므로, 실제 학회 참석일 기준으로 참여연구자가 아닌 연구원을 대상으로 학회 참가비를 연구인력지원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례 11.

학회 참가비를 미리 내야해서 사업 종료일 이후에 개최하는 학회의 참가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사업기간 내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회에 대한 참가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제4항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및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사례 12.

학회 참석을 위해 연회비를 결제하면서 전년도 연회비 미납분을 함께 집행했습니다.

정산결과

전년도 연회비 집행분 해당연구와의 무관한 집행으로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14항제3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는 집행이 불가 합니다.

사례 13.

영리기관에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탕비실 물품 (종이컵, 커피믹스, 휴지, 물티슈 등)을 연구실운영비로 구입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영리기관이 집행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 제4항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의 계상이 불가합니다.

사례 14.

영리기관에서 연구행정을 맡고 있는 연구지원인력이 과제책임자의 출장에 동행하여 출장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연구지원인력 대상으로 집행한 출장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6항

직접비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에 한하여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장시에만 출장비 집행이 가능하며, 간접비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연구지원인력의 경우 출장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사례 15.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6개월 사용료를 선지급하면 1개월 추가 사용기간을 제공하여 월 100만 원씩
6개월 사용료 총 6백만 원을 소프트 웨어활용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일 : 2024.8.1., 연구개발기간 : 2023.1.1.~2024.12.31.)

정산결과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1개월분 사용료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10항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의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액을 소프트웨어활용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사례 16.

사업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연구개발기관을 초과하지만, 계약 최소단위인 3개월 단위 보다, 1년 단위 사용금액이
저렴하여 1년을 계약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사용계약기간이 계약 최소단위가 아니므로, 사업 기간 종료일 이후의 사용분에 대한 금액을 불인정

적용근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음

사례 17.

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이 해당 과제의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야근을 수행함에 따라, 초과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야근식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비참여연구자를 대상으로 집행한 야근식대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14항 제1호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는 계상이 불가하므로, 참여연구자가 아닌 연구원이 과제 관련 업무로 야근을 하였더라도 해당 야근식대를 연구인력지원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례 18.

참여연구자의 개인 사유로 출장 일정을 변경하게 되어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고
재예약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취소 수수료를 출장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정산결과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제2항

불가피한 사유(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등)로 인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례 19.

석사 졸업을 앞둔 참여연구자가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있는 주제로 석사 논문을 작성하여, 해당 논문집 인쇄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14항 제2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5.04.)」 p.220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 불가한 비용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해당 논문집 인쇄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례 20.

학회참석을 위해 출장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일비 및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였는데, 학회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산결과

학회에서 중식을 제공하므로, 지급한 식비 중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3호 가목 및 제25조 제7항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사용은 불가하며,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 21.

사업 수행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데, 대표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통해 사용하면, 사용료가 저렴해져서 계열사를 통해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계열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간 거래이므로 해당 금액은 불인정

적용근거

- 연구개발비 계상불가 항목
-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 관련) 내부거래
-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범위>

- *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가족 관계인 경우
- * 가족 관계(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경우 형제자매)
- *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경우
- * 인력, 자금, 영업시설이 공유되는 경우
- *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사례 22.

전시회 부스 참가비와 관련된 물품의 렌트비를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정산결과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한 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7조 제1호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

-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 *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홍보전문가 양성
- *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사례 23.

영리법인이지만 회의 및 출장시 지출한 식대의 부가세는
추후 환급받지 않을 예정이라 사업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환급 가능한 부가세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해당 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관련 연구개발비 계상불가 항목

*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례 24.

시험분석비 집행 후 분석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산결과

해당 비용 증빙미비 집행분으로 불인정

사례 25.

내부 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상, 숙박비 한도 초과 집행한 경우

정산결과

숙박비 초과 집행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6항제2호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사례 26.

연구활동비의 인쇄비 집행 품목이 연구개발기관의 카달로그 및 사무용 봉투 등을
제작하여 홍보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산결과

간접비성 비용인 기관 홍보비용 집행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제1호가목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관련 비용은 간접비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사례 27.

전문기관 승인없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금액이 해당 사업 직접비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정산결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제2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현물포함)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계상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21호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사례 28.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장비 사용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연구비로 지급받았습니다.

정산결과

환급가능한 매입부가세 연구개발비로 집행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1조 제4항 제1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소속 임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자체적으로 공제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환급 가능한 부가세에 해당되어 연구개발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한걸음 더!

- ① 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SW도 검수확인이 필요해요.
- ② 단순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연구비 사용이 불가해요.
- ③ 회의록, 출장 관련 보고서 등 내부문서에는 사업과 관련되어 집행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 ④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추가 부정정집행 사례

- ①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연구개발기관 내부직원(외부참여연구자 및 겸직 참여연구자 포함) 간 회의비
- ② 평일 점심식대로 사용된 연구인력 지원비
- ③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이 포함된 회의비, 야근식대
- ④ 출장자, 휴가자에 지급한 야근식대
- ⑤ 출장비 중 식비와 회의비를 중복으로 집행한 경우
- ⑥ 비영리기관이 자체규정 없이 집행한 연구실 운영비
- ⑦ 연구실운영비중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다음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등
 -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 ⑧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핸드폰케이스, 경조사봉투, 필통 등 개인성 경비
- ⑨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등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다만,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
- 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환급 가능하지만 연구개발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⑪ 연구개발기간 내 수료하지 않는 교육비
- ⑫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교육훈련비를 집행한 경우
- ⑬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 ⑭ 참여연구원의 참여기간 외 국내외출장비
- ⑮ 국내여비의 하이패스 충전 금액 중 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이용금액 이외 금액
- ⑯ 일반 상식 사전 등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관련성 무관한 도서 구입비
- 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집행된 외부전문기술활용비
- ⑱ 직접비로 집행한 간접비성 경비(홍보비, 프로그램 등록비, 지식재산권 등록비 등)
- ⑲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여비
- ⑳ 연구개발기관 자체 여비규정과 상이한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 ㉑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과 상이한 R&D 과제용 규정을 적용하여 회의비등을 집행한 경우
- ㉒ 연구개발 목적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고가의 수입 사무용 의자 및 책상 구입한 경우
- ㉓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이력이 아닌자 의 연구인력 지원비를 집행한 경우

06

연구수당



사례 1.

해당 단계연구기간이 3년이고, 참여연구원이 2명인데, 1년차 수행중 참여연구원 1명이 퇴사했어요. 그래서 기관규정에 의거 1명에게 연구수당 100% 지급했어요.

정산결과

해당 단계연구기간 동안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전체 참여연구원이 지급대상이므로, 1명에게 70% 초과 지급한 연구수당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6항

연구수당이 특정연구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실종과제인데요. 적당한 테스트베드를 찾지 못해 토지구입가인 직접비의 50%를 다음 단계로 이월했어요. 그 외 토지구입 외 모든 연구는 예정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연구수당을 계상한 대로 지급했어요.

정산결과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현물, 연구수당 미포함) 대비 2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불인정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지급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frac{20}{100}$)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7항 1호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3.

저희 기관은 연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제의 단계 종료 후 직접비 현금 예산의 사용비율이 50%에 불과합니다.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한 예산 2천만 원을 전액 사용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정산결과

직접비 사용비율의 20%p 가산한 비율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연구수당 6백만 원 불인정

* 연구수당 한도액 : 2천만 원 × (50% + 20%) = 1,400만 원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7항 2호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의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사례 4.

저희 기관은 연구수당이 인건비의 20%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연구개발계획서 예산으로 인건비 1억 원 및 연구수당 2천만 원을 편성하고 단계 종료시까지 인건비는 1억 원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산결과 인건비 한도 초과로 4천만 원이 불인정이 되어 인건비 사용액 1억 원 중 6천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대로 2천만 원 전액 사용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정산결과

연구수당은 정산결과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까지 사용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연구수당 8백만 원 불인정

* 한도액 : 6천만 원×20% = 1,200만 원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7항 1호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 계획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 됩니다.

사례 5.

저희 기관은 단계가 종료된 과제가 있는데 과제기간 동안 같이 참여한 연구근접지원 인력도 기여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수당 2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정산결과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2백만 원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7항 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제1항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가능한 항목으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 됩니다.

사례 6.

저희 기관은 연구수당이 인건비의 20%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단계 시작 시점에 인건비 1억 원 및 연구수당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연구 진행과정에서 인건비 예산을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1.1억 원으로 증액하고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도 20% 증액하여 2천2백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정산결과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수당 2백만 원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2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사례 7.

저희 기관은 과제의 단계 종료 후 연구수당 집행 시 별도의 기여도평가는 하지 않고 연구책임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정산결과

합리적인 기여도평가 없이 지급한 연구수당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5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연구수당은 불인정 됩니다.

사례 8.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기간 종료후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추후 정산과정에서 수정인건비가 감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 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한 금액은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제7항 1호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추가 부정정집행 사례

- ① 협약시 산정한 연구수당(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계상한도)을 초과하여 사용한 연구수당
- ② 해당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연구개발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연구수당
- ③ 2인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한 과제에게 참여연구자 중 1인에게 전체 연구수당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
- ④ 연구근접지원인력 또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 ⑤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원이 없음에도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연구수당을 계상 후 계상액 전액 집행한 경우 수정된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구수당
- ⑥ 연구수당은 100% 집행하였으나, 직접비 집행비율은 70%일 경우 직접비 집행률과 20%p를 초과한 10%p만큼 연구수당

한걸음 더!

- ① 연구비 정산결과 수정인건비가 감소하면 연구수당은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로 재산정해야 해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한 연구수당은 불인정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6조 6항 1호
** 수정인건비 : 인건비 (현물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학생인건비 + 미지급인건비
- ②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집행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시 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해야 해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6조 7항 2호
- ③ 학생 연구자도 기여도 평가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 ④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인건비와 상이하므로 임금과 같이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돼요.

07

위탁연구개발비



사례 1.

위탁연구개발비를 증액하여도 직접비의 40% 범위내인 것으로 파악되어 과제 수행 중 승인없이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정산결과

전문기관 승인 없이 원래 계상된 금액 보다 20% 이상 증액한 위탁연구개발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 3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 2.

위탁연구기관인데,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추후 국세청 납입 하기 위해 기관 흡수했어요.

정산결과

위탁연구과제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일 경우 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5.04.)」 p.236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례 3.

영리기업인 주관기관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위탁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위탁연구비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정산결과

환급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 연구개발비로 집행분 불인정

적용근거

과세대상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면 사후 환급 받을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사례 4.

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위탁과제 관련 매출부가가치세를 집행하였습니다.
연구비 잔액이 남았는데도 매출부가가치세를 전액 집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정산결과

위탁연구개발비 집행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행을 매출부가가치세 불인정

적용근거

위탁연구과제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일 경우 위탁연구개발비에서 실집행 위탁연구비의 10퍼센트를 한도로 매출부가가치세 집행가능 합니다.

사례 5.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탁연구개발비 집행 시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집행하였어요

정산결과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불인정

적용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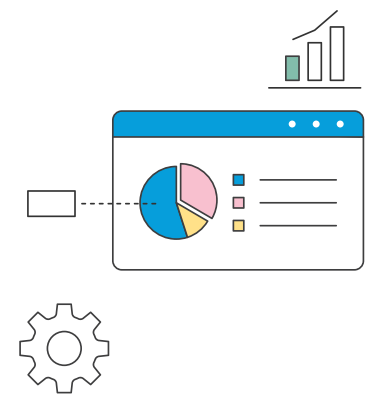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학술 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추가 부정정집행 사례

- ① 과세대상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조정되지 아니한 매출 부가가치세
- 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 ③ 위탁연구개발기관에 계상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 ④ 과세대상 과제를 수행중인 위탁기관이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연구개발비로 집행을 부가가치세 금액 불인정
- ⑤ 연구개발비에서 매출부가가치세를 집행한 경우, 총 연구개발비 집행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을 매출부가가치세 불인정

한걸음 더!

- ①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를 초과하여서는 안돼요.
- ②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 보다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08

국제공동연구 개발비



사례 1.

원래계획에 없었지만 과제수행중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기관규정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했어요.

정산결과

원래 계획에 없고,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지않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8조 5항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협약 시에 국외기관 간 계약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하며, 원래계획과 달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고자 하시면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연구비 계상을 해야 합니다.

사례 2.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협약시 관련 내용 및 계약서를 첨부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실제 집행된 금액이 계획과 달리 감소됐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은 용도 변경하여 사용했어요.

정산결과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감소한 금액을 전문기관 사전승인 없이 다른용도로 사용한 연구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8조 5항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원래계획과 다르게 증액하거나 감액해서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

사례 3.

연구개발비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은 하지 않았는데 과제를 수행하다보니
해외대학과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별도로 계약을 맺고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정산결과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되어 있지 않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8조 1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연구개발비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하였는데 과제를 수행하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기존 계획 및 금액을 임의로 변경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정산결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8조 5항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국외기관 간 계약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가능하며, 원래계획과 달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고자 하시면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연구비 계상을 해야 합니다.

추가 부정정집행 사례

- ①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 증명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경우

한걸음 더!

- ① 위탁연구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어요.
- ②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인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③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외기관의 연구진행 정도 또는 성과를 검토한 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09

간접비



사례 1.

1, 2차년도가 같은 단계인데, 2차년도에 간접비 고시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2차년도 과제수행중에 변경된 고시비율만큼 간접비를 증액해서 사용했어요.

정산결과

간접비를 전문기관 사전승인없이 증액하여 사용한 연구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 1항/ 제46조 1항/ 제55조

연구개발비 간접비율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계로 구분되는 과제는 해당단계 시작시점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단계 내 해당연차에 예산조정이 발생하였거나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해당시점의 간접비 고시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연구장비 입고가 지연되어 해당 비용을 다음 단계로 이월했고 이월한 금액은 직접비의 60%에 해당 됩니다. 그런데 특허출원비용, 전시 참가비 등이 필요하여 간접비 전부를 집행했어요.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인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해서 사용한 간접비 집행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6조 5항 3호

연구비 정산시 직접비(현물 미포함) 집행비율이 50%이하이고,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회수합니다.

* 불인정 금액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사례 3.

과제 수행을 위해서 연구공간이 더 필요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임차하고 간접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임차료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1조 4항 7호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경우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수행중 임차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공간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집행가능합니다.

사례 4.

올해 창업한 영리기관인데, 회사 사무실에 비치할 소화기를 간접비를 사용하여 구매했어요.

정산결과

연구실 안전관리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비 사용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6조 4호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2조 3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법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1호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이어야 하며,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위탁자)의 인정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례 5.

저희 기관의 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매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회사 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있고,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했어요.

정산결과

연구실 안전관리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비 사용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6조 4항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2조 3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1조 1항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조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음에도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건강검진 비용의 집행은 불인정 대상이 됩니다.

사례 6.

회사의 보안을 위해 세콤 설치가 필요하여, 간접비를 사용하여 집행했어요.

정산결과

연구실 보안관리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6조 6항

연구실 보안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 취약점 진단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안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의 보안을 위한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7.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을 채용하였으며, 간접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통해 성과급 지급시 별도의 평가는 하지 않고 급여의 50%를 지급하였어요.

정산결과

성과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0조

간접비 인력지원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 8.

영리기관입니다. 과제 내용상 출장을 자주 가야하기 때문에 간접비로 차량을 장기렌트 했고, 장기렌트비용을 집행했어요.

정산결과

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1조 2항, 제64조

간접비는 여러 연구개발과제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경우 현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차량이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후 임차를 시작했으며,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출하여 기관에서 과제수행을 위해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례 9.

이번에 진행된 박람회에서 회사홍보를 위해 부스를 설치하고 부스 설치비와 홍보물 제작비용을 연구과제 간접비로 집행 했어요.

정산결과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지 않는 연구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7조 1항

간접비 과학문화활동비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홍보비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학홍보물에 대한 집행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비용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 10.

영리기관인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성과가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출원이 예상보다 많아 간접비를 증액해서 집행했어요.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한 연구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14조 4항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비율(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퍼센트까지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성이 있더라도, 해당 10퍼센트를 넘어 집행한 연구비는 불인정 대상이 됩니다.

사례 11.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계상한 연구재료비 잔액이 많이 남아 간접비로 전용하여 과제의 홍보비로 집행했어요.

정산결과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증액한 간접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3조 1항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포함)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사례 12.

저희기관은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라 간접비 고시비율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기타 비영리기관으로 판단하여 간접비 비율을 17%로 계상하였어요.

정산결과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한 연구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14조 4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은 영리기관으로 포함되며, 영리기관으로 포함될 시 간접비 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사례 13.

00대학교인데 학교의 사업비 관리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100% 흡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이월되는 금액이 많았어요 직접비 집행률은 30%입니다.

정산결과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비율 만큼 불인정 하므로, 간접비 흡수금액의 70%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6조 5항 3호

연구비 정산시 직접비(현물 미포함) 집행비율이 50%이하이고,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회수합니다.

* 불인정 금액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추가 부정정집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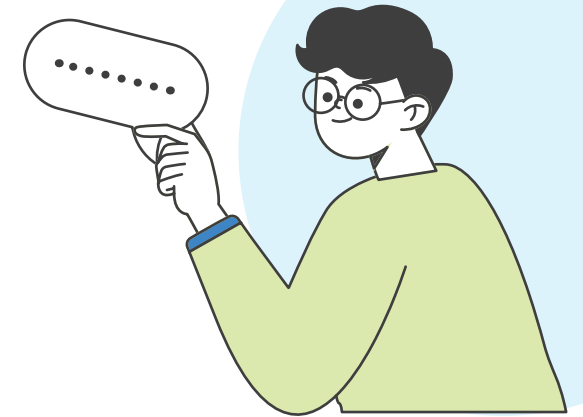
- ①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한 경우
- ②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③ 사업종료일 직전에 대량으로 구입한 안전관리 물품(구입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실제 사용한 것으로 입증한 수량 초과분 불인정)
- ④ 연구개발기간 내에 미완료된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 ⑤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간접비 인력지원비로 집행한 경우
- ⑥ 참여연구자나 지원인력이 아닌자에게 능률성과급을 집행한 경우
- ⑦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없는 안전관리비를 집행한 경우(비타민 음료, 건강보조제 등)
- ⑧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보안 관리비를 집행한 경우(개인금고, 회사 보안진단, 회사 VPN 구축 등)
- ⑨ 영리기관에서 사무실 관리비를 간접비로 집행한 경우
- ⑩ 승인 받지 않은 간접비 증액
- ⑪ 비영리기관이 과제시작시점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한 경우
- ⑫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을 집행한 경우

한걸음 더!

- ① 간접비로 구매한 물품도 검수 확인이 필요해요.
- ②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별로 간접비 고시비율이 다르므로 기관의 형태에 따라 간접비 비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 ③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따라 한도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직접비 집행비율도 관리해야 해요.
- ④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도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밀정산을 진행하니 세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해요.
- ⑤ 대학기관의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해서는 안돼요.
- ⑥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를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과제별로 관리해야 해요.
- ⑦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해요.
- ⑧ 간접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직접비로 변경할 수 있어요

10

기타



사례 1.

추후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을
예정이라 부가세도 연구비로
집행했어요.

정산결과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연구비로
환입처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금액 불인정

사례 2.

연구비카드로 재료비 집행하였는데
사용금액에 포함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환원하지 않았어요.

정산결과

환급받을 수 있는(환급여부 불문)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불인정

사례1, 2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4항 1호

환급받지 아니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사용 불가합니다.

* 집행건별 부가세 환입이 번거로우신 경우 시스템(Ez-baro)을 통해 여러건을 한번에 환입처리 가능하므로, 주기적으로 환입하여 연구비로 포함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3.

연구기간(단계) 종료 이후 연구개발비의 미사용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용실적보고일 전에 남은 연구비를 사용했어요.

정산결과

연구기간(단계) 종료 후 사용가능한 항목 이외의 사용액을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2조 제4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등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가능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례 4.

자체 여비규정에 따르면 과장급 이하 출장 식비는 1식 1만 원이나 연구개발과제에서
집행하는 출장 식비의 경우 1식 2만 원을 적용해서 사용했어요.

정산결과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 불인정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1조 제3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안됩니다.

사례 5.

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회사에서 우리가
제작하는 시험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구매하고 연구비를 집행했어요.

정산결과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불인정

사례 6.

공동연구기관인데 주관기관에서 우리가 제작하는 시험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구매하고 연구비를 집행했어요.

정산결과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불인정

사례5,6 적용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1조 4항 5호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간 발생하는 비용은 내부거래로서 연구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예외) 내부거래이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계상 가능합니다.

- ①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②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계약이체 혹은 계정대체하여 사용한 비용
- ③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 ④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⑤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 ⑥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정부출연 연구개발기관의 분원간 발생하는 비용

추가 부정정집행 사례

- ① 연구개발비 이월 등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미승인 집행건
- ②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을 회의비로 집행한 건
- ③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개발비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연구개발비 카드 발급 전에는 예외 인정)
- ④ 증빙서류가 미미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 ⑤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
- ⑥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의 현금을 먼저 사용 후 정산한 집행건
- ⑦ 과제 수행 및 목표달성과 직접 관련이 없고 수행기관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공통비용(예. 세무기장료)을 연구개발비로 집행한 건

한걸음 더!

- ① 환급여부를 불문하고,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불가해요.
- ②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제6호는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이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관 전문기관과 협의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해요.



Ⅲ.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1

연구개발계획서나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없는지?

- 연구개발비 항목만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별적인 물품 구매·대여 등 연구개발비 사용 결정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할 수 있음
- 다만,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4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함

Q2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비영리기관에서만 계상 가능하며,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사용하는 출장비, 연구인력 지원비 등의 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음

Q3

직접비 집행률에 따라 연구수당 집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집행률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7항 2호에 따라 현물을 제외하여야 함

Q4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인건비(연구근접 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음(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계상액'의 70%까지임

Q5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계상액 중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7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6항은 연구수당이 특정연구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개인별로 70%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Q6

간접비 총액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율 적용기준) 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간접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단계 내 해당연차에 예산 조정이 발생하였거나 연구수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해당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로 조정할 수 있음

Q7

연구개발비 사용시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하나요?

- 직접비 중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 제외) ② 연구재료비 ③ 연구활동비 ④ 연구수당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함

Q8

직접비 집행비율이 50%이하일 경우 간접비는 전액 사용할 수 없는가?

- 직접비 집행비율(직접비 내 현물 미포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회수됨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집행비율)

Q9

협약 체결 당시 제출한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된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해당 단가내에서 사무용 기기로 변경 하여 구매 가능한가요?

-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중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용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협약 체결 당시 제출한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계상·사용 가능함
- 다만, 과제수행중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을 변경사용(금액증액/품목변경/특정품목 수량증가)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4 서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 가능

Q10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제2항에 따라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사용할 수 없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단,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함(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등은 계상불가)
- 또한, 영리기관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총액 증액 또는 품목을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1항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Q11

영리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입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인 A대학 소속의 교수(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할 수 없음

Q12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연구비카드 발급 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하나 환입가능한 부가세는 연구비 지급 불가

Q13

협약 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비 지급 전에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사용한 경우에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1조제2항에 의해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Q14

참여연구자가 출산전후 휴가 중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는 인건비로 사용 가능

*정부출연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3항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제3항

*영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3항

Q15

**외국 기관과의 업무협약의 회의를 위해 계획되었던 해외출장이
출장자의 코로나 감염으로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연구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재난·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연구비로 사용가능.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Q16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은
어떠한 이유로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하나요?**

-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
-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고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 ① 특허 등의 출원·등록이 주로 연구개발 과제가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
 - ② 여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③ 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되는 점 등이 있음

Q17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
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대상
인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조에 의해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

Q18

**직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차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
계별로 계산해야 하나요?**

- 연구수당 지급비율, 직접비 사용(집행) 비율, 간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구개발비의 정산 기간에 부합하게,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해당 단계) 별로 산출해야함



IV.

상시·연차점검 / 정산 절차

상시·연차점검 / 정산 절차 94

연구비 점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연구비의 점검 및 정산은 집행내역에 대한 상시점검(수시/분기), 연차점검(연차별), 단계 정산 및 정산회수금 회수 등의 단계로 실시됩니다.

- 단, 부정행위 등 발생시 관련 법*에 의거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오니, 연구비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시행령 제59조 등

<국토교통R&D 연구비 관리 주요 프로세스>



0 상시/연차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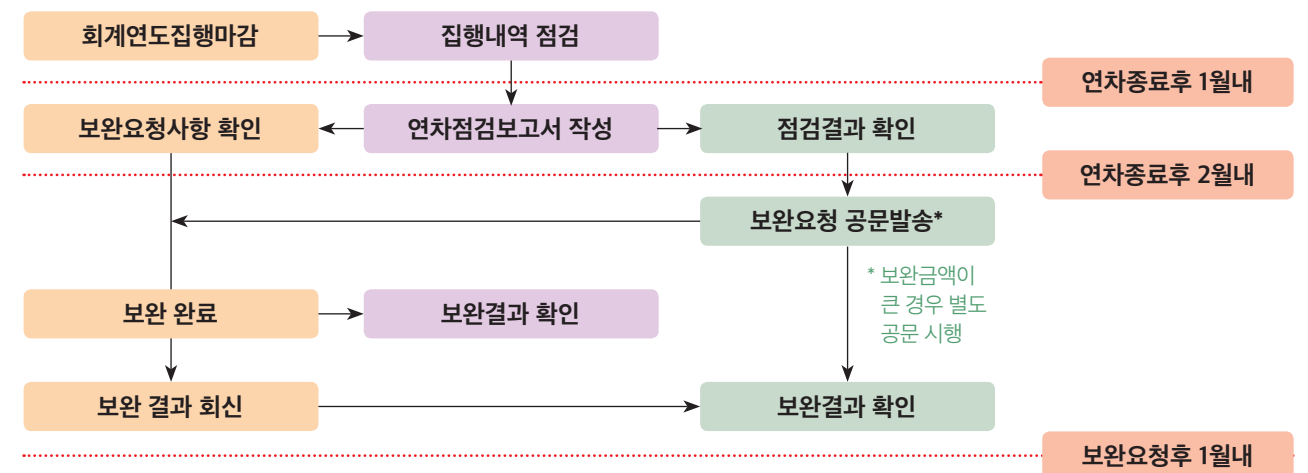
- 위탁정산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에 등록된 집행내역 및 증명자료를 통해 분기별/연차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 사업(과제)별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 지정

- 연구기관은 시스템에 보완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요청사항에 맞게 집행을 취소하거나 증명자료를 보완합니다.

- 전문기관과 위탁정산기관은 보완 결과를 확인합니다.

<연차점검 절차 및 일정>



2 단계정산

- 위탁정산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에 등록된 집행내역 및 증명자료를 통해 분기별/연차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 사업(과제)별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 지정

- 연구기관은 시스템에 보완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요청사항에 맞게 집행을 취소하거나 증명자료를 보완합니다.

- 전문기관과 위탁정산기관은 보완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산 진행 일정>

